

# 복식부기

시·도 공무원교육원

## 공무원 윤리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 목 차

제1장 머리말 .....	3
제2장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 .....	7
1.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의의 .....	7
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채택 .....	11
3. 자본거래와 경상거래의 구분 .....	13
4. 재무보고서 해설 .....	14
5. 재정상태보고서 해설 .....	19
6. 재정운영보고서 해설 .....	33
7. 재무제표간 연계 .....	39
제3장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효과 .....	40
1. 통합 재정정보 제공을 통한 재정상황 파악 가능 .....	40
2. 원가의식 제고 등을 통한 경영마인드 향상 .....	43
3.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투명성 강화 .....	44
제4장 도입과정상의 장애요인 및 극복노력 .....	46
1. 정부회계 특성의 한계 .....	46
2.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	46
3.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	47
4.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효과 분석 애로 .....	47

<b>제5장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발전방안</b> .....	48
1. 공감대 형성 및 전문인력 확보 .....	48
2. 지방자치단체 재무정보 인프라 구축 .....	48
3.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고도화 .....	49
<b>제6장 결 론</b> .....	49
<b>(부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b> .....	50

## 제1장 머리말

Global Standard의 확산 및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 및 공공부문 효율성 증진은 국가간 핵심의제로 등장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성과중심 체제로의 이행은 예산만을 중시하던 사고에서 예산·결산을 동일하게 중시하는 사고, 즉 재정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결산을 중시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도입은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의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일대 개혁<sup>1)</sup>인데, 회계제도가 발전한 주요 외국의 사례<sup>2)</sup>에서 보여지듯 공공부문에 있어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성공요소는 자원, 인적자본, 그리고 재정운영 체계의 혁신이며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원의 투입량과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 경영전략의 핵심요소에 해당한다.

최근 지방재정은 그 규모와 중요도에 걸맞도록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두바이, 상해, 송도 등 지역중심의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국가경쟁력의 중추로서 전략적 지방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60% 이상이 지방에 의해 집행되는 “지방경영의 시대”에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대단히

---

1) 현행 예산회계시스템으로는 재정의 투명성, 회계책임성 및 성과측정을 위한 재정정보 산출이 곤란하므로 회계시스템의 개혁이 필요

2)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한 개혁과제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전격 도입되었고, 중앙정부도 국가회계법이 공포('07.10.17)되어 2009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50여년간 유지해온 정부회계제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고 혁신적인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정확한 통합재정정보의 활용을 통해 지방경영 마인드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 살림살이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증대로 예산 낭비 방지 및 정책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렇듯 기업회계의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정부회계에 이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제도는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舊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처리지침)」을 기초로 범국가적인 재정(회계) 개혁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다. 최초 부천시, 강남구 등에서 복기부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그 동안 쏠 지방자치단체에 시험운영(지방회계기준 적용 및 복식부기 전용 전산시스템 개발 및 보급 등)을 실시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246개 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법적 재무보고서인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되어 2008년 8월에 공시되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에 대한 통합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현금주의·단식부기<sup>3)</sup>에 의한 결산보고서 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검토 후 결산 감사위원회 제출 및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록 참조).

1) **기업형 회계방식의 도입**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일반적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하여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복식 부기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공회계책임의 적절한 이행 및 그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2)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되며,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함

3) **재정상태보고서** :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는 유동성 기준으로 배열되고 총액을 재정상태보고서에 계상하도록 함

---

3)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함으로써 일정기간의 사업성과와 일정시점의 재정상태 파악 불가, 자산의 비용화 개념(감가상각비)이 없어 기간별 성과와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정보제공 곤란, 지자체간 또는 조직단위간 투입비용과 정책성과 비교 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완적인 제도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4) **재정운영보고서** :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되며, 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하고,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도록 함

5) **자산의 평가기준** :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 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되,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재정상태보고서의 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

통상 회계는 기록방식에 따라 단식부기회계와 복식부기회계로 구분되고, 거래인식기준에 따라 발생주의회계와 현금주의회계로 구분되며, 회계처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무회계(재정상태 및 운영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와 원가·관리회계(원가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한 중장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회계는 기록방식과 거래인식에 있어서 현금주의 단식부기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2007년도부터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제도를 도입, 병행(dual system)해서 시행하고 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평균의 원리<sup>4)</sup>(복식부기)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회계적 개념의 거래(transaction)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말한다.

### 1.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의의

#### 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cash basis)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한다.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반면

---

4)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금액과 대변합계금액이 일치하게 되며 각 계정의 잔액을 합계하는 경우 [자산 = 부채 + 순자산]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함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인식되는 미수세금, 미수수익, 미지급금,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의 발생주의 계정을 사용한다.

#### 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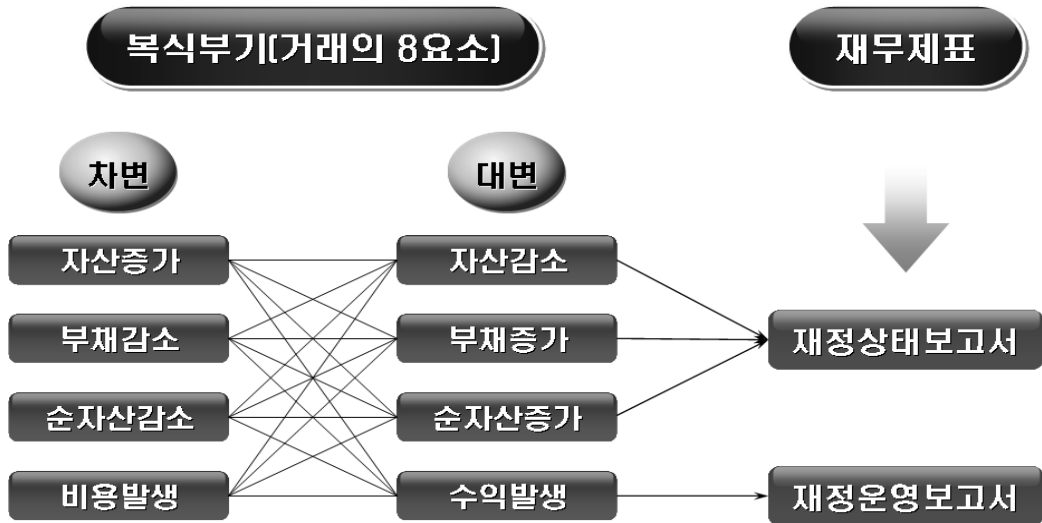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는 현금, 채권,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사용하여 온 기록방식이고,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는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 계정(account)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기록방식이다. 복식부기에서는 모든 거래의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기록하게 되며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분개라 하는데, 분개는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회계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007년까지 사용되던 복식부기회계시스템(DAIS) 및 2008년 1월부터 사용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자동분개 처리방식이다. 복식부기회계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에 의하여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게 된다. 특정 기간동안의 회계처리 내역을 합칠 경우에도 전체의 경우 모두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일치하게 된다.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 부르는데 이러한 원리에 따라 복식부기회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회계처리의 오류 발생여부의 자기검증 기능이 존재하게 된다.

거래의 8요소는 차변요소와 대변요소로 나누어진다. 차변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순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다. 대변요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다. 그 결과 ① 자산·

부채·순자산을 사용하여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재정상태보고서)하고,  
 ② 수익·비용을 사용하여 일정기간의 경영성과(재정운영보고서)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림 1 : 거래의 8요소 및 재무제표와의 연계>



[분개처리 예시]

① 사례 1 : 비용 발생 ⇔ 자산 감소

- 공무원 급여를 현금으로 3억원 지급

(예산회계)

지출(세출)
인건비 3억원

⇔

(재무회계)

비용(발생)	자산(감소)
공무원급여 3억원	현금 3억원

- 인건비 지출은 현금(자산) 감소와 비용 발생으로 구분하여 계리
- 자산 감소는 재정상태보고서에 반영, 비용 발생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반영

② 사례 2 : 자산 증가 ⇔ 자산 감소, 수익 발생

- 장부가액 100억원의 토지를 120억원에 매각(매각이익 20억원)

(예산회계)		(재무회계)			
수입(세입)		자산(증가)	자산(감소)		
매각대금 120억원		현금 120억원	토지 100억원	수익(발생)	처분이익 20억원

- 현금수입을 원인별로 매각대금과 수익으로 구분 계리
- 자산변동과 수익발생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

### ③ 사례 3 : 자산 증가 ⇔ 자산 감소

- 건물 신축 : 금년투자 150억원(기투자 100억원, 총투자 250억원)

(예산회계)		(재무회계)			
지출(세출)		자산(증가)	자산(감소)		
공사비 150억원		건물 150억원	현금 150억원		
		↓	↓		
기투자 100억원 자동파악 불가		건물 250억원	현금 250억원		
(연도간 독립회계)		(연도간 누적처리)			

- 장기계속사업의 연도간 소요 재원의 명확화

### ④ 사례 4 : 자산 증가 ⇔ 부채 발생

- 하수도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100억원(기 발행 200억원)

(예산회계)		(재무회계)			
수입(세입)		자산(증가)	부채(증가)		
지방채수입 100억원		현금 100억원	지방채증권 100억원		
		↓	↓		
기발행 지방채 200억원과 자동연계 불가		수질정화시설 300억원	지방채증권 300억원		
(세입만 단순계리)		(자산,부채 종합관리)			

- 자산과 부채를 동시 인식 → 현금의 유입 원천 자동표시

## 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채택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수입(세입)·지출(세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발생주의에서는 실제 현금의 수지에 상관없이 관련 거래의 발생사실에 초점을 맞춰 채권·채무 및 수익·비용의 발생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부과 고지된 세금, 만기 도래전 발생한 미수이자 등은 수익으로 계리하고,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채무보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지출예정액 등은 비용으로 계리하며,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부채로 계리한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미수', '미지급'에 대한 계리처리가 한 단계 새로이 추가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산에 있어서 '출납정리기간'과 '앞당기어 충당·사용'이 없다.<sup>5)</sup> 예를 들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는 부과 고지된 금액 전체를 지방세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중 현금으로 수납된 부분과 아직 회수되지 않아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유입된 현금과 향후 관리해야 할 미수채권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1) 수입계상 시점 : 예산회계(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는 현실적으로 현금이 수납된 단계에서 수입으로 계상되는데 반해 재무회계(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는 그보다도 전 단계인 채권확정(발생) 시점, 즉 「징수결의 시점」, 「조정(조사결정) 시점」에서 수입으로 계상
- 2) 지출계상 시점 : 물품구입에 있어서 예산회계에서는 현금을 지출한 시점에서 지출로 계상되지만, 재무회계에서는 그보다도 전단계인 채무확정(발생) 시점, 즉 「물품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검사·검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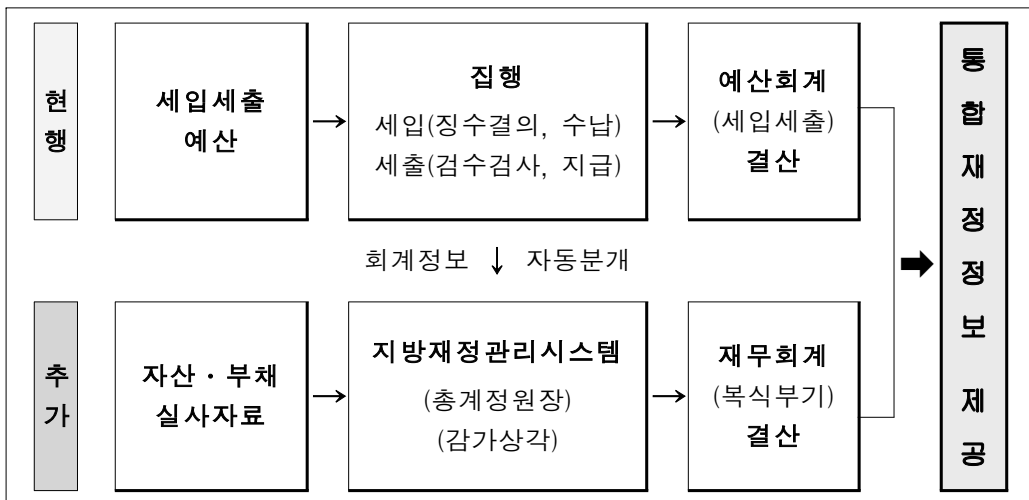
---

5) 출납폐쇄기간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특례로서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중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시점」에서 지출로 계상된다. 따라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경리관) → 검사·검수(검사공무원) → 자금배정(자금관리 담당과장) → 대가 청구(계약자) → 지출의 결정(지출원) → 지급명령 발행(지출원) → 지급(출납원·금고) 등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방식에서는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 등에 대해 건건이 인식하지 않고, 검사·검수여부에 따라 확일적으로 처리(미지급금 등).

- 3) 예산외거래의 처리문제 : 예산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과 세출에 해당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만을 세입세출결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 세출과 관련이 없는 현금의 유·출입거래와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는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재무회계에서는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래나 세입세출과 관련 없는 현금 유·출입거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sup>6)</sup>는 회계적 거래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림 2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도>



6) 위탁 징수하는 국세 및 도세의 출납,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의 예수금, 자산의 취득형태 중 기부채납, 양여, 누락재산의 발굴, 관리전환, 불납결손처분, 감가상각비, 외화환산 등

**<표 1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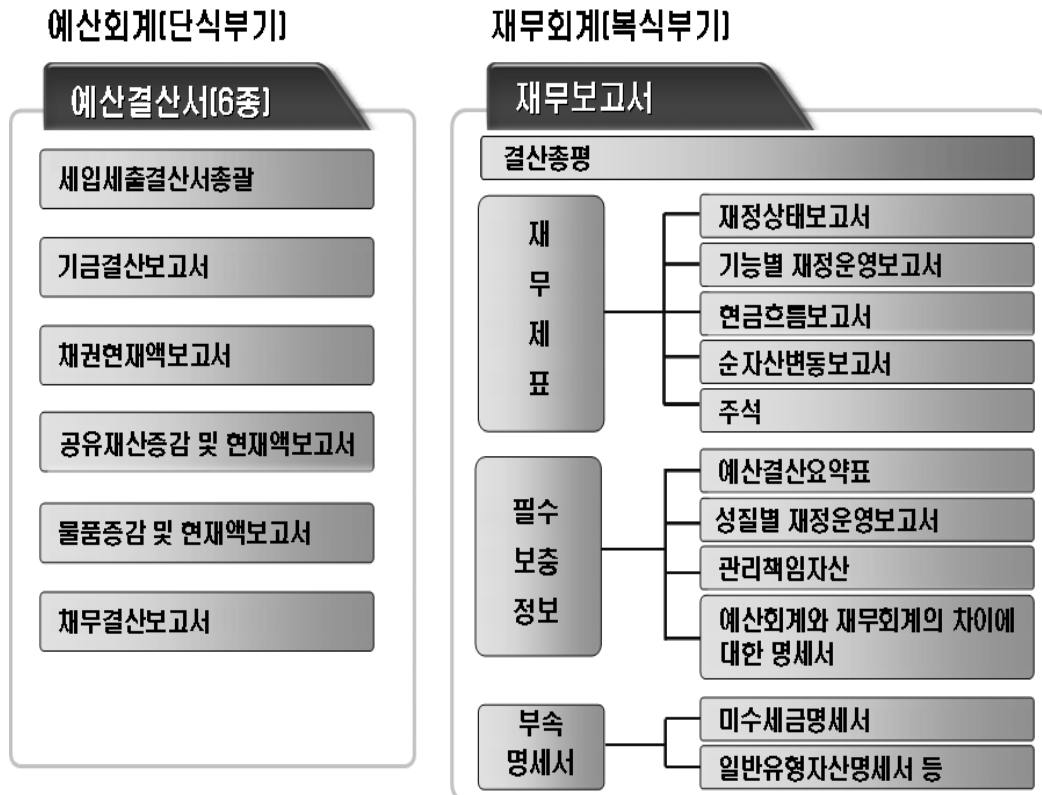
구 분	예 산 회 계	재 무 회 계
의 의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보고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
회계방식	현금주의 단식부기 (공기업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기업형)
결 산 보 고 서	세입세출결산서(6종)	재무보고서(재무제표 등)
보고형식	회계단위별 분리보고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가치지향	행정 내부조직 중심 - 예산집행 통제, 법규 준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
자기검증 기 능	없음	회계오류의 자동 검증(대차평균)

### 3. 자본거래와 경상거래의 구분

자본(투자)거래와 경상(수익·비용)거래가 혼동 처리되면 재정상태와 재정 운영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자본거래는 주로 재정 상태보고서와 연계되고, 경상거래는 주로 재정운영보고서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재무회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경상(수익)적 지출과 자본적(투자적)지출의 구분이다. 경상거래인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은 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 과목에 연결되며, 예를 들어 페인트칠, 전구 교체, 깨진 유리의 교체 등 유형(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현상유지적 지출이다. 자본거래인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은 미래기간의 수익발생을 위한 지출로서 당기 재산내용의 변동을 초래하는데,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과목에 연결되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설치, 비상계단 설치 등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다(지방회계기준 제52조 참조).

#### 4. 재무보고서 해설

<그림 3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서 비교>



##### 가. 결산 총평

결산 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를 말한다. 머리말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 특징사항, 필수적인 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으로 구성된다.

- 주요 특징사항과 필수적인 사항은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은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 원인에 관한 설명 등을 말한다.
-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무분석지표<sup>7)</sup> 및 통계자료를 말한다.

## 나.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보고서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및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가 특히 중요하다.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연결의 방식에 의하여 통합하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년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재정상태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회계연도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능력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와 유사한 개념이다. 스톡(stock)정보로서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재정상태보고서의 등식은 (자산 = 부채 + 순자산)이다.

---

7) 기업회계 재정지표 및 주요 외국의 재정지표를 비교·연구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지표(3개 분야 29개 지표) 개발('08.5. 행정안전부)

2) **재정운영보고서(Government's Operating Statement)** : 재정운영보고서는 재무보고 실체의 당해 사업기간 동안의 收益·費用의 발생상황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와 유사한 개념이다. 플로우(flow) 정보로서 '일정 기간'의 재정성과를 나타낸다.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운영차액으로 표시한다.

3) **현금흐름보고서(Statement of Cash Flows)** :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무보고실체의 당해 사업기간 동안의 ① 경상활동(주로 수익·비용 변동), ② 투자활동(주로 자산 변동), ③ 재무활동(주로 부채 변동) 등을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지방회계기준(부칙 제1항)에 따르면 현금흐름보고서의 재무제표 계상시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성의 어려움, 세입세출결산서의 관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적용 및 통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후 적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4) **주석(Note)**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보고서의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가 제공되고 재무제표의 각 과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계정과목의 정의 및 재무보고실체의 중요한 회계처리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한 첨부자료이다.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계정과목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한다.

**<예시 : 주석 표시사항(지방회계기준 제41조)>**

-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 ②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 ③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 ④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⑤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 ⑥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 ⑦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다. 필수보충정보

필수보충정보란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① 예산결산요약표 ②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③ 관리책임자산 ④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다.

#### 라.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는 ① 미수세금명세서<sup>8)</sup> ② 미수세외수입금명세서 ③ 대여금명세서 ④ 전출금명세서 ⑤ 장기투자증권명세서 ⑥ 일반유형자산명세서 ⑦ 주민편의시설명세서 ⑧ 사회기반시설명세서 ⑨ 감가상각명세서 ⑩ 기타비유동자산명세서 ⑪ 장기차입부채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명세서 ⑫ 공유재산 용도별명세서<sup>9)</sup> 등을 부속명세서로 규정하고 있다.

8) 미수세금명세서, 미수세외수입금명세서, 대여금명세서, 전출금명세서, 장기투자증권명세서, 기타비유동자산명세서, 장기차입부채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명세서는 주석으로 표시할 경우 부속명세서에서 생략 가능

9) 공유재산의 용도별 구분은 예산회계에서 이용되는 분류기준으로서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지방재정 실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용도별 구분에 대한 내역을 부속명세서에 표시함

## 마. 주요 외국의 복식부기 도입사례

주요 선진국의 복식부기 도입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의 재무보고서 및 재무보고체계 등을 비교해 보면 한국 정부회계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표 2 : 주요 외국의 재무보고서 비교>**

구 분	미국	영국	뉴질랜드
재 무 보 고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재무제표</li> <li>- 통합재무제표</li> <li>- 활동보고서</li> <li>- 현금흐름보고서</li> <li>- 펀드유형별 재무제표</li> <li>· 필수보충정보</li> <li>- 예산비교명세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산출요약서</li> <li>· 운영원가계산서</li> <li>· 대차대조표</li> <li>· 현금흐름계산서</li> <li>· 부처의 목적·목표별 자원명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성과표</li> <li>· 재정상태표</li> <li>· 현금흐름표</li> </ul>

**<표 3 : 주요 외국의 재무보고체계 및 주요 특징>**

구 분	재무보고 체계	주요 특징
미국	통합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통일하고, 펀드유형별 결산보고는 병행처리하는 방식	예산편성은 수정발생주의, 결산보고는 재무제표에 예산실적을 추가하는 방식
영국	자원회계 및 예산제도(RAB)를 통해 발생주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며 단일체제를 실시	발생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기획, 예산편성, 결산보고를 총괄적으로 연계하여 재정관리의 성과개선 및 예산효율성을 제고함
일본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병행처리, 예산결산을 중심으로 하고 재무제표는 보충적 정보로 활용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재무회계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

## 5. 재정상태보고서 해설

<그림 4 : 재정상태보고서 예시>

I.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II.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III. 일반유형자산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IV.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감가상각누계액 V.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VI.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자산총계 ①	I.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II.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III.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총계 ② I. 고정순자산 II. 특정순자산 III. 일반순자산 순자산총계 ③ 부채와 순자산총계	재정상태보고서로 알 수 있는 것은? 1. 사용가능한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2. 상환해야 할 부채는 얼마나 되는가? 3.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얼마인가?
--	--	---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기업회계에서의 “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 구성된다. 주민공유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각종 재산내역은 어떠한가하는 자산(asset)정보와 빚은 얼마나 쌓여있는가 하는 부채(liability)정보,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순자산 정보 등으로 나뉜다. 시점간의 스톡정보를 비교하게 되면 자산 변동, 부채 변동, 순자산 변동과 같은 재무상태의 변동상황을 알 수 있다. 자산은 차변에 표시되고, 부채·순자산은 대변에 표시된다. 재정상태보고서는 토지·건물·현금 등 자금의 운용형태와 부채, 순자산 등 자금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자산·부채 관리에 필요한 미래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재정상태보고서(자산, 부채 등)의 작성기준은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 및 부채는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자산

### 1) 자산의 정의

자산(assets)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일정기간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미래 경제적 효익<sup>10)</sup>이나 공공서비스 잠재력<sup>11)</sup>(service potential)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현금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칭한다. 자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 또는 물품보다 다소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정의 속에는 현금뿐 아니라 채권(미수세금, 미수금 등), 융자금(대부자산), 토지·건물·비품은 물론이고 일반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사회기반시설(SOC자산 :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댐 등) 및 주민편의시설(도서관, 공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까지도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asset)은 기업회계의 일반적인 자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고유한 자산에 속한다.

---

10) 직·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예산회계에서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에 이를 지출로 처리하지만, 재무회계에서는 컴퓨터의 사용으로 미래 현금수익을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능력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처리

11) 미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도로·공원·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미래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은 없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산임

## <자산과 유사 개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물 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
- **채 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 2) 자산의 인식

자산은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②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할 수 있다.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 3) 자산의 평가

자산평가란 자산의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화폐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며, 화폐가치를 부여할 때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하는가에 따라 자산의 평가 금액이 달라진다.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모든 자산은 취득원가(acquisition cost)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취득원가란 자산의 구입대금 뿐만 아니라 동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차량운반구인 승용차의 경우 차량 자체의 가액은 물론, 등록세,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이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자산은 금전지출에 의한 유상취득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자산과의 교환, 관리전환 또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예 : 주민이 지방

자치단체에 입목, 토지 등을 기부하는 기부채납 등)에는 유상 취득원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취득원가로 한다.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sup>12)</sup>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미수세금 등의 미수채권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적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추정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sup>13)</sup>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채권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대여금, 융자금 등도 이를 준용한다. 산출된 대손상각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sup>14)</sup>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수수료, 세금 등)을 가산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지방회계기준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감액평가하여야 한다.

---

12) 일반적으로 회수가능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함

① 순실현가능액 : 자산의 매각대가에서 매각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금액

② 사용가치 :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금액

13) 미수세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미수세금 잔액에 과거 3년간 평균 결손경험율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세목별로 설정

14) 재고자산을 판매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취득세, 등록세, 매입수수료, 운임 등)

화폐성 외화자산은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비화폐성 외화자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화폐성 외화자산은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을 말한다.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자산의 처분의 경우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무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여는 사법상의 증여계약으로서 양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절한 비용(기부금 등)과목으로 처리한다. 토지의 공정가액 평가는 ①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 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적용 ③ 감정가액과 공시지가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대체평가 방법<sup>15)</sup>을 적용한다.

#### 4) 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사용연수(耐用年數, 수명)가 유한한 모든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비용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정자산은 이를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는 그 수요의 변동이나 기술적 진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유용성 또는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가는데,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여 재정상태와 재정성과에 반영시키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즉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효익이

15) 별도로 산정된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대상 토지 인근지번의 1/3가격,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표준지 최저가, 평가대상 토지가 위치한 법정동 표준지가의 최저가 등을 적용

발생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효익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가배분과정이다. 원가배분하는 방법으로는 정액법, 정율법, 종합상각법, 대체법 등이 있다.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노후화, 기술적 진부성 등이 없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함
-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sup>16)</sup>
-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sup>17)</sup>

### 5) 자산의 종류

자산과목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 유동성배열법<sup>18)</sup>에 따라 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산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감안해 지방회계기준은 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용도별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부속명세서에서 표시한다.

16)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

17)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음

18) 1년(회계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가 여부에 따라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

### 가)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등을 포함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채권은 미수지방세 및 미수금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즉 미수금은 조세징수 이외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미수세금은 수익 인식기준(발생주의)에 의해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납기일의 미도래 등의 이유로 징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즉 징수 결정을 하였으나 당기말 현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체납세금은 부과된 지방세 중에서 납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일 현재 징수되지 않은 세금 중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금액이다.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불납 결손처분 추산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대손충당금은 미수세금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나)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예컨대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과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sup>19)</sup> 등을 포함한다.

회수가 불확실한 장기미수세금, 장기대여금 등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추산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결손처분충당금은 장기미수세금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19)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접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형성적 전출금은 장기투자증권과는 별도로 기타투자자산으로 표시, 다만 타회계, 기금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사·공단에 대한 전출금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

#### 다)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자산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및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포함한다.

일반유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장기간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여 유형자산에 표시함으로써 공사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자산으로 관리하고, 해당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건물 등으로 대체한다.

#### 라) 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예컨대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체육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주민편의시설은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각 법률의 내용과 실질적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목적대로 자산을 분류하며, 특정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산도 그 실질이 주민편의시설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 마)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을 말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고정자산이다. ①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 자산 ② 일반적인 유형자산에 비해 경제적 내용연수가 상당히 장기적인 자산 ③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자산. 예를 들어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 및 항만시설, 기타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포함한다. 사회기반시설은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바)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식별가능<sup>20)</sup>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과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통제<sup>21)</sup>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 법률상의 권리 및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전산 소프트웨어구입비,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등을 포함한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20) 식별가능성 : 무형자산은 권리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함

21) 통제가능성 : 무형자산은 해당자산의 소유 권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나. 부채

### 1) 부채의 정의와 인식

부채(liabilities)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과 지방채증권뿐 아니라 예산회계에서 인식하지 않는 미지급채무(미지급금, 예수금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미지급채무나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은 현금의 유·출입을 가져오지 않는 부채로 발생주의 회계에서 나타나는 과목에 속한다. 채무부담행위의 경우 예산회계에서는 채무의 일종으로 보지만 재무회계에서는 구체적인 채무의 확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의 원인이 되는 교환거래가 완료된 경우 부채로 계상한다.

### 2) 부채의 평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이란 지방회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 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으로 한다. 지방채증권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 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하고, 발행차금은 증권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환입)하고 동 상각액(환입액)은 지방채 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지급규정, 퇴직금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부채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부채를 말한다.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우발상황에는 진행중인 소송사건<sup>22)</sup>, 지급보증채무 등이 있다. 우발상황의 처리는 ①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②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나 동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상황의 내용 및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 등을 주석으로 기재 ③ 우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동 이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22) 예를 들어 교통사고발생시 도로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3) 부채의 종류

부채는 장래 변제해야 할 채무인데, 일반적으로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이 예정된 경우 유동부채로, 1년 이상의 기간 후에 상환이 예정된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다. 미지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액을 말한다. 회계에서는 주로 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계상하며 비용을 지출하고 대금이 미불된 것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예수금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하였다가 해당 목적에 지급하는 모든 예수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세입세출외 현금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세수입, 시·군의 도세수입 등은 차변은 현금·예금자산으로, 대변은 예수금인 유동부채로 잡았다가 반환하면서 정리한다. 시·도에서 받은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수익으로 잡는다.

#### 나)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지방채할인발행차금, 장기미지급금 등이다. 장기차입부채가 만기가 가까워져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유동성장기차입부채라는 유동부채에 계상하게 된다.

#### 다)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를 말하며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선수수익, 장기에수보증금 등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금액, 지급시기 및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 부채로 현금주의 관점에서는 부채가 아니지만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부채에 해당한다.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운동부원 등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퇴직금 지급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 다. 순자산

### 1) 순자산의 정의

정부회계에서 순자산(net asset)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서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순편익(net benefit)으로 기업회계의 자본과는 그 성격과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에는 양도와 처분이 제약되는 사회기반시설, 각종 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순자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자산의 증감사항은 재정상태보고서와는 별도의 재무제표인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통해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 순자산의 증가사항으로는 전기오류수정이익,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 기타순자산의 증가 등이 해당된다. 순자산의 감소사항으로는 전기오류수정 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 기타순자산의 감소 등이 해당된다.

## 2) 순자산의 종류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장기차입금(유동성 장기차입금 포함), 지방채증권(유동성지방채증권 포함), 금융리스부채 또는 연부매입채무인 장기미지급금(유동성 장기미지급금 포함) 중 투입자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순자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운용목적이 공공서비스 제공 이외로 제한되어 있는 순자산으로 고정순자산을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채무상환 목적으로 적립하는 감채기금 등과 같이 적립된 기금원금을 가용자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용자금을 구분하여 기금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지출을 충당하는 적립성기금이 대표적이다. 적립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 등은 매년 예산에 따라 특정사업 목적을 위해 운용되지만, 기금원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사용목적별로 자금을 구분하는 구분회계의 개념이므로 특정순자산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적립성 기금과 그렇지 않은 기금의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기금의 순자산은 모두 특정순자산으로 계산한다.

기금의 재정상태보고서에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이 계상된 경우 고정순자산을 먼저 계산하며, 총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을 차감한 잔액을 특정순자산으로 계산한다. 일반순자산은 전체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 및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잔여액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일반순자산} = \text{순자산 총계} - (\text{고정순자산} + \text{특정순자산})$$

## 6. 재정운영보고서 해설

<그림 5 : 재정운영보고서 예시>

재정운영보고서						
과 목		일반회계	기타회계	기금회계	지방기업회계	6 내부거래
1 기능별	성질별					
I. 비용 입법및선거 일반행정 교육및문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 II. 비용합계 (A) III. 수익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IV. 수익합계 (B)	2 I.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 II. 정부간이전수익 III. 기타수익 IV. 수익총계 (A) ----- 3 V. 인건비 공무원급여 ----- VI. 운영비 VII. 정부간이전비용 VIII. 기타이전비용 IX. 기타비용 X. 비용총계 (B)					
운영차액 (=B-A) 4	운영차액 (=A-B)					

재정운영보고서로 알 수 있는 것은?

- 1 기능별 재정운영 실적은 어떠한가?
- 2 당년도에 발생한 수익은 과목별로 얼마인가?
- 3 당년도에 발생한 비용은 과목별로 얼마인가?
- 4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얼마인가?
- 5 회계기금별 수익, 비용, 운영차액은 각각 얼마인가?
- 6 지방자치단체 내 내부거래는 얼마나 되며, 내부거래 (중복부분)을 제거한 운영차액은 얼마인가?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산정이 아닌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재정상태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재정운영보고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재무제표의 형식이나 정보내용은 기업회계와 상당히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보고서의 성격, 개념, 구성체계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회계에서는 제품이나 상품에 투입된 원가(비용)와 재화의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직접 연계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같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순이익의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잉여금(또는 결손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하고,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한다.

## 가. 비용

### 1) 비용의 정의와 인식

비용<sup>23)</sup>은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형태로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말한다. 순자산이 감소하더라도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와 같은 거래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감소와 순자산감소로 처리한 후 순자산변동 보고서에 그 내역을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특징은 수익과 비용을 일반적으로 재화·서비스 제공과 그 대가를 개별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는 비교환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회계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타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

---

23) 비용(expense)은 보통 원가(cost)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임. 즉, 원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하여 희생된 또는 사용된 자원이나 서비스를 화폐 가치로 표현한 금액이고, 비용은 당해 기간의 수익에 대응되는 것으로 원가 중 당해 기간에 소멸된 부분을 의미함

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2) 비용의 종류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한다. 단,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 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한다. 기능별 분류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한다. 성질별 분류는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다. 현행 예산회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재무회계에서 필요한 과목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외화환산손실 등이다.

가) **인건비** :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기타 비정규직원, 상용인부 등 고용인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로 구성된다.

나)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 경비로 도서구입 및 인쇄비, 소모품비, 홍보 및 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 등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 운영비, 위원회 운영비, 주민자치활동 운영비, 의료기관 운영비, 징수교부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이 있다.

다) **정부간이전비용** : 정부간이전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조직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국가에 대한 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교육기관운영비 보조금 등이 있다.

라) **기타이전비용** : 기타이전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등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운수업계보조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예비군운영 보조금, 국제기관부담금, 국외지원금, 전출금비용,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 부담금, 기타이전비용 등이 있다.

마) **기타비용** : 기타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자산처분손실, 자산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 등 감가상각비, 미수세금 등 대손상각비,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기타비용 등이 있다. 상각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산가치의 감소 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합리적 추정치에 따른 비용이다. 예를 들어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상각 및 미수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 등이 있다.

## 나. 수익

### 1) 수익의 정의와 인식

수익이란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말한다. 정부 회계에서 수익은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 이외에 과세권에 의한 조세, 정부간 이전에 의한 보조금 등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이 포함되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관리전환 및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와 같은 거래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증가와 순자산 증가로 처리한 후 순자산변동보고서에 그 내역을 표시한다.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수익창출 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비교환 거래에 의한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해당 수익에 대한 법적·행정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수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① 수익 획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사실상 완료될 것 ② 교환이 발생할 것. 일반적인 재화에 대한 수익실현기준은 생산기준, 판매기준 및 회수기준이 있지만, 정부회계의 경우 생산기준이나 회수 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별로 없으며 공유재산이나 물품매각의 경우 판매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방세수익의 인식기준의 경우 지방회계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결의하는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데, 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징수결의 이전의 수납시점에서는 수납금액을 부채(선수지방세)로 계상하고, 특별징수 방식의 경우 연부연납이나 분납이 가능한 세액은 일단 당해 세금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연부연납이나 분납으로 납기가 이연된 금액은 미수세금으로 계상한다. 세외수익의 경우 재화를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2) 수익의 종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 수익으로 구분한다.

가) **자체조달수익** :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을 포함한다.

지방세수익은 「지방세법」에 규정한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경상세외수익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포함한다. 임시세외수익은 세외수익 중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국·공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및 기타임시세외수익 등을 포함한다.

나) **정부간이전수익** :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교부에 의해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시도비보조금수익 등을 포함한다.

다) **기타수익** : 기타수익은 상기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계간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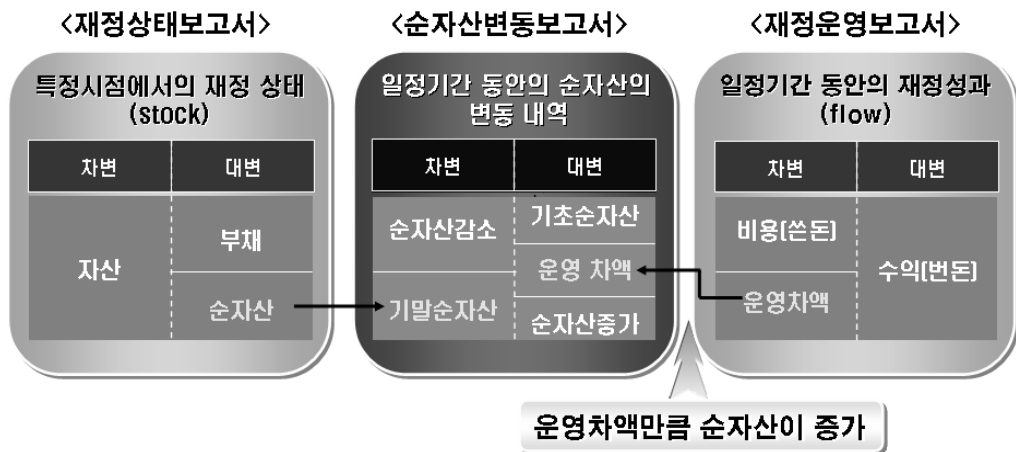
#### 다. 운영차액

「이익」이란 용어는 공공회계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대신 「운영차액」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다. 정부운영은 단순한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주민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추구하므로 단순히 수익과 비용의 차액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 7. 재무제표간 연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기존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와 결정적인 차이는 재무제표간 연계이다.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는 각 회계보고서(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 등)간 연계장치가 없이 별도의 관리주체별로 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자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예산집행이 이뤄질 때 자동으로 자산의 증감이 표시되지 않고 별도의 검토 및 자료 입력의 과정을 거쳐야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제표는 보고서간 상관관계를 통해 특정 분야의 변경이 발생하면 다른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한결 높아지게 되는 구조이다.

<그림 6 : 재무제표간 연계>



위의 그림에서 보면 자산에서 재정상태보고서의 순자산은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기말순자산과 같고, 재정운영보고서의 운영차액은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운영차액과 같은 등 재무제표의 구성항목간 연계를 통해서 보고서의 정합성이 유지된다.

## 제3장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효과

발생주의를 기초로 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한 효과로는 종합재정 상태 및 재정운영성과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초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 부채, 순자산(net assets)의 종합관리로 재무상태와 수익, 비용의 파악으로 재정운영 결과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원가관리,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과 경영분석(business analysis)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하여 자산과 부채의 관리강화로 회계책임성(accountability)이 증대되고 연간 자산취득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 1. 통합재정정보 제공을 통한 재정상황 파악 가능

#### 1) 제한적 정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정보제공

예를 들어 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 결산에서는 단편적으로 부채가 많다는 재정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재무회계(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에서는 부채규모와 함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재고자산과 유동 자산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투자자산의 장기금융상품 등 재정정보를 균형되게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 2) 자산 관리능력 향상

지금까지의 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다년도에 걸쳐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최초 토지보상부터 준공까지 사업 관련 예산이 여러 비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준공시점에 총 투입금액과 직·간접원가 파악이 어려웠다.

즉 현재의 예산과목의 경우 장기공사 진행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민간행사실비보상금, 국외여비 등 10개 이상 과목에 예산이 나누어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재무회계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총 투자금액과 직·간접원가 파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향후 성과 측정과 경영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공사시행시 현금지출만이 기록될 뿐 공사완료시까지 자금지출에 대응하여 공사시설물이 회계처리되지 않는 반면, 재무회계에서는 자금의 지출에 대응하여 공사완성 이전이라도 회계처리가 이뤄지고 있고 원인과 결과가 대응된다. 또한 건설중인 자산 관리로 진행중인 각종 공사의 총투자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재무제표 외에 별도로 필수보충정보와 주석 등에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 총괄적인 관리와 함께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건물, 집기비품, 차량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내용연수를 고려한 감가상각을 통해 결산서에 표시되는 자산의 가액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각을 통해 비용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자산의 가치를 현재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산의 감가상각을 재정운영보고서상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항목을 운영수지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은 자산의 유지·보수의 필요성과 자산의 교체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 3) 채권·채무 관리능력 향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자료생성이 가능하다. 미수채권(시기 미도래인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 등)과 수익의 현년도와 전년도 구분이 별도의 작업 없이 검색가능하다. 따라서 세입관리 특히 채납관리와 수익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실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을 추정할 수 있다.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재정운영보고서상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항목을 운영수지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예산회계에서는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부채가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한 세입세출결산서상에는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서 자산과 부채의 비교에 의한 재정상태 파악이 곤란한데 반해, 재무회계에서는 현금의 유·출입을 가져오지 않는 자산의 증감변화도 기록·계산되기에 보다 정확한 채무상태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재무제표를 이용하기에 재정상태 파악이 용이하고 또 적절한 발행비용 및 이자비용 등을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간별로 비용을 인식하므로 기간별 수익비용 측정이 가능하다. 지방채 승인과 실제 자금수입과는 기간적 차이가 발생하며 그 관리는 대체로 승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따르면 징수결의한 금액으로 관리된다. 그리고 부채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물품검수, 공사준공·기성검사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채로 계상하며 또한,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인부의 퇴직금지급 예상액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여 고정부채에 표시하는 등 지급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부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4) 이중확인 장치를 통한 자기검증과 재정행위의 투명화

복식부기회계가 예산과목-관리과목-회계과목으로 연계되어 있어, 복식부기팀에서 관리과목과 회계과목 확인시 세출예산과목의 오류를 찾을

수 있는 이중확인 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징수부와 세입연계시스템간의 연계강화로 실과소별·세목별 징수결의금액과 수납금액의 차이발생으로 복식부기팀에서 징수결의 누락을 적시에 발견할 수 있다.

#### 5) 국제회계기준과의 적합성 확보

우리나라는 IMF,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발생주의회계제도에 의한 재정통계자료 작성을 요청받고 있다. IMF는 정부재정통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정부재정통계지침(GFS : Manual on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을 규정하고 있다. GFS는 기본적으로 정부활동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분석하는 통계분석틀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는 IMF GFS에서 제시하는 분류체계 보다 훨씬 종합적 세부적으로 분류·구분되어 있다.

## 2. 원가의식 제고 등을 통한 경영마인드 향상

현금주의에 입각한 현행 단식부기제도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수치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금주의로 처리하므로 발생주의에 입각한 수익과 비용(원가)의 인식이 없다. 또한 자산·부채·순자산과 관련된 자본적 거래와 수익·비용과 관련된 수익적 거래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혼동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수치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재정상태가 실질적으로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알 수 없으며, 실제보다 과대·과소평가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사업별 원가를 정확히 모르니 공무원들에게 원가의식이 생길 수가 없다.

(예)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시설의 감가상각비, 투자자산의 기회비용 등을 대부분 수지상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회계간 지원금을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사업별 경영성과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업별 원가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보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발생주의에 입각한 원가 인식이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한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다.

(예) 세외수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수수료 등이 법이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도 없으며, 인식을 하는 경우에도 원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지역주민을 고객으로서 규정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이념을 공무원에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원가의식 등 경영마인드가 양성된다.

### 3.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투명성 강화

기업회계 방식을 활용한 풍부한 재정정보를 제공(공시)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 지역주민이 자치행정에 참가할 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다.

#### 1) 주민의 알 권리 충족

지역주민들이 보다 궁금해 하는 주민의 알 권리(눈높이)에 부응하는 재무분석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발생주의에 입각해 개발되는 각종 재무분석지표를 예시한다면 주민1인당 부채, 주민1인당 총비용, 실질부채 비율, 자체조달수익비율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 2) 자본적지출과 경상적경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보 제공

예산을 주민편익을 위한 숙원사업(예컨대 도로개설, 수해방지시설 등)인 자본적 지출에 사용했는지, 소모성 경비(예컨대 공무원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즉 자본적인 투자지출(재정상태보고서의 고정자산 항목)과 경상비용 지출(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구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본적 지출의 결과인 유형자산을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로 나누어 투자금액의 증감현황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주민편의시설은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공연시설, 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회계기간 동안의 투자액 증감을 재무제표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와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폐기물부속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시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현황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를 회계제도 측면에서 뒷받침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자율권 확대와 동시에 재정책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3)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결과 반영

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지방공사 등 출자기업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함께 고려되지 못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정부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웠지만, 재무회계에서는 출자금 등 투자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결산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는 기관을 포함함으로써 종합적인 재정상황 파악이 가능해져 정책결정자 및 재정책임자의 회계책임성이 증대된다.

## 제4장 도입과정상의 장애요인 및 극복노력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는 정부예산과 회계를 포괄하는 재정인프라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므로 제도도입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무제표를 신속하게 주민에게 제공하여 회계책임성의 확보 및 거래의 이중성에 의한 자동검증 원리로 오류방지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로 재정투명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업무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므로 추가업무부담이 발생하고 보완적인 제도로 도입되어 기존제도와 혼란 및 새로운 제도의 적용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 1. 정부회계 특성의 한계

기업과 존립목적이 상이하고, 공공부문에 있어 자산·부채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보유자산에 대한 현황 및 통계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도입·시행과정에서 정부회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舊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 등을 제·개정 및 운영해 왔다. 또한, 재무정보 구축의 기반이 되는 자산·부채 실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3년('05~'07년) 동안 자산·부채 실사 및 자료 검증기간을 거쳐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 2.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는 조직 내부의 회계처리 업무 또는 단순한 지원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등의 조기정착 의지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존 업무 외에 새로 추가되는 제도라는 인식하에 기존제도와와의 충돌에 대한 우려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반감도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재정(회계)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등에게 도입 필요성 및 도입효과를 중점 홍보하였고, 지역주민들이 별 어려움 없이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복식부기 이야기」도 발간·제공하였다.

### 3. 복식부기회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순환보직 등) 및 회계부서의 특성상 잦은 담당자 교체, 감사 우려 및 강도 높은 업무량에 따른 업무 기피, 복식부기회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복식부기 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복식부기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실무사례 중심의 결산 담당자 교육 실시, 기업회계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4.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효과 분석 애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기법 및 분석시스템 부재로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개발 및 보급,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적합한 재무분석지표<sup>24)</sup> 개발을 통해 제도 도입효과 및 재무분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

24)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성 3개 분야 29개 지표 개발('08.10)

## 제5장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발전방안

### 1. 공감대 형성 및 전문인력 확보

아직까지도 도입내용 및 도입효과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복식부기의 회계적 이론은 매우 높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모든 공무원이 복식부기를 일상업무 처리의 기본원리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자동분개처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은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으며, 복식부기 도입효과 등에 대한 중점홍보를 통해 복식부기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리자 집단의 추진력 확보와 실무자급의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의 운영능력이 성패의 관건이기 때문에 관리자급의 인식 변화와 실무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하에 향후 회계제도 개혁의 주체가 될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2. 지방자치단체 재무정보 인프라 구축

정부수립 이후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첫 법적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시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필수적인 재무정보(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자료 구축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무보고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적합한 재무분석지표를 추가 개발하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간 비교(시계열) 및 지방자치단체간(조직간) 비교를 통해 지역살림살이에 대한 분석·진단 및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 3.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고도화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의 성공적이고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제도가 시행('08.1)됨에 따라 원가정보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미래관리정보 산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경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가계산하는 방법 개발 및 효율적인 재무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지방회계기준 개선, 연결재무제표 및 결산마감 조정 등의 과제개발이 필요하다.

## 제6장 결 론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하나같이 예산회계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시도를 단행하였다. 이는 성과주의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예산회계 제도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상징임과 동시에 회계개혁이 정부효율성 향상을 위한 필연적인 과제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도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장기적인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교육, 홍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3.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상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각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제4조 (재무보고의 목적)** ①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재정운영성과·현금흐름 및 순자산 변동에 관한 정보
2. 당기(當期)의 수입이 당기(當期)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5조 (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회계실체)** ①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② 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1. 행정형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사업형 회계실체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③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장 재무보고서

**제7조 (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재무제표·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제8조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재정운영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제9조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② 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는 해당유형에 속한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하되 내부거래를 빼고 작성한다.

③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 제3장 재정상태보고서

**제10조 (재정상태보고서)** ①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상태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1조 (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①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②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12조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물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13조 (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 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備妄計定)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 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 재산 및 잡종재산의 용도별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부속명세서에서 표시한다.

**제15조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제16조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제17조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및 건설중인 일반유형 자산 등을 말한다.

**제18조 (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체육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 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및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19조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 및 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제20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 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및 무형자산(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등을 말한다) 등을 포함한다.

**제21조 (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제22조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제23조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제24조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권,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제25조 (순자산의 분류)** ①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제4장 재정운영보고서

**제26조 (재정운영보고서)** ①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산정이 아닌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운영보고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하고,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며,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27조 (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 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9조 (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2.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행정활동과 관련한 비용산출을 위한 계산과 배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준칙에 따른다.

**제30조 (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 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분류한다.

**제31조 (자체조달수익)** ①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을 말한다.

② 지방세수익은 「지방세법」 제5조에 규정한 세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③ 경상세외수익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으로서,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말한다.

④ 임시세외수익은 세외수익 중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국·공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기타임시세외수익 등을 말한다.

**제32조 (정부간이전수익)**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교부를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서,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시도비보조금수익 등을 말한다.

**제33조 (기타수익)** 기타수익은 제31조와 제32조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으로서, 회계간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을 말한다.

**제34조 (비용의 분류)** 비용은 일반행정, 교육 및 문화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 제5장 현금흐름보고서

**제35조 (현금흐름보고서)**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② 현금흐름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36조 (현금흐름의 구분)** ① 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용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 시설·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제37조 (현금흐름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제6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38조 (순자산변동보고서)** ①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② 순자산변동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39조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①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기부채납으로 생긴 자산증가, 기타순자산의 증가 등을 말한다.

②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 기타순자산의 감소 등을 말한다.

## 제7장 결산총평,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40조 (결산총평)** ① 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를 말한다.

② 머리말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특징사항, 필수적인 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으로 구성된다.

③ 주요특징사항과 필수적인 사항은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④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은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관한 설명 등을 말한다.

⑤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통계자료를 말한다.

**제41조 (주석)** ① 주석(註釋)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註釋)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2.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6.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7. 그 밖의 사항으로서 채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채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 (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는 채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예산결산요약표
2.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3. 관리책임자산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③ 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43조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채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 (결산총평 등의 작성지침)**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른 결산총평,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양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6조 (미수세금 등의 평가)** ①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② 미수세의수입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제48조 (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 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1조 (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52조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제53조 (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 (지방채증권의 평가)** ①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 할인 또는 할증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 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55조 (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6조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제수익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제57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제58조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에 따른 리스자산과 부채의 평가,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비용 등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59조 (우발상황)** ①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60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오류의 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오류의 수정은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말한다.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제3항·제35조 및 제5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② **(재정상태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 ③ **(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사회기반시설 중 이미 조사된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재 정 상 태 보 고 서  
 당해연도 20××년×월×일 현재  
 직전연도 20××년×월×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 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 반 회 계	기 특 회	타 별 회	기 금 회 계	지 공 기 회	방 업 별 회	내 부 거 래	계	일 반 회 계	기 특 회	타 별 회	기 금 회 계	지 공 기 회	방 업 별 회	내 부 거 래
<b>자 산</b>															
I.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															
II.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															
III.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IV.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															
V.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															
VI.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															
<b>자산총계</b>															
<b>부 채</b>															
I.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III.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															
<b>부채총계</b>															
<b>순 자 산</b>															
I.고정순자산															
II.특정순자산															
III.일반순자산															
<b>순자산총계</b>															
<b>부채와순자산총계</b>															

【별지 제2호 서식】

재 정 운 영 보 고 서(기능별)

당해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 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 특별 회	타 별 계	기 금 회 계	지 공 기 특별 회	방 업 기 별 계	내 부 거래	계	일반 회계	기 특별 회	타 별 계	기 금 회 계	지 공 기 특별 회	방 업 기 별 계	내 부 거래	계
<b>I. 자체조달수익</b>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b>II. 정부간이전수익</b>																
지방교부세 수익																
국고보조금 수익																
...																
<b>III. 기타수익</b>																
회계간전입금 수익																
기부금수익																
...																
<b>IV. 수익총계</b>																
<b>V. 비용</b>																
입법및선거																
일반행정																
교육및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민방위관리																
소방관리																
지원 및 기타경비																
<b>VI. 비용총계</b>																
<b>VII. 운영차액(IV-VI)</b>																

【별지 제3호 서식】

현 금 호 림 보 고 서

당해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 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 특 회	타 별 계	기 금 회 계	지 공 기 회	방 업 기 회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특 회	타 별 계	기 금 회 계	지 공 기 회	방 업 기 회	내 부 거 래	계
<b>I.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b>																
1.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2.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																
<b>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b>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대여금의 회수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일반유형자산의 처분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대여금의 상환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일반유형자산의 취득																
. . .																
<b>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b>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차입금의 차입																
지방채증권의 발행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차입금의 상환																
지방채증권의 상환																
. . .																
<b>IV. 현금의 증가(감소)( I + II + III)</b>																
<b>V. 기초의 현금</b>																
<b>VI. 기말의 현금(IV+V)</b>																

**【별지 제4호 서식】**

**순 자 산 변 동 보 고 서**

당해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 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특회	타별계	기금 회계	지공기특회	방업별계	내부 거래	계	일반 회계	기특회	타별계	기금 회계	지공기특회	방업별계	내부 거래	계
<b>I. 기초순자산</b>																
<b>II. 운영차액</b>																
<b>III. 순자산의 증가</b>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에 의한 누적이익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																
기타순자산의 증가																
<b>IV. 순자산의 감소</b>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에 의한 누적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																
기타순자산의 감소																
<b>V. 기말순자산 (I+II+III-IV)</b>																

【별지 제5호 서식】

재 정 운 영 보 고 서(성질별)

당해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 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 특 회	타 별 회	기 금 회	지 공 회	방 업 기 별 회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특 회	타 별 회	기 금 회	지 공 회	방 업 기 별 회	내 부 거 래	계
<b>I. 자체조달수익</b>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b>II. 정부간이전수익</b>																
지방교부세수익																
국고보조금수익																
...																
<b>III. 기타수익</b>																
회계간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																
<b>IV. 수익총계</b>																
<b>V. 인건비</b>																
급여																
복리후생비																
...																
<b>VI. 운영비</b>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업무추진비																
...																
<b>VII. 정부간이전비용</b>																
타자치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																
<b>VIII. 기타이전비용</b>																
민간사회복지 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																
...																
<b>IX. 기타비용</b>																
<b>X. 비용총계</b>																
<b>XI. 운영차액(IV-X)</b>																



# 복 식 부 기

---

2009년 2월 일 인쇄

2009년 2월 일 발행

편 집 : 지방 행정 연수원 기획 지원부

집 필 : 행정 안전부 인사 정보 과  
사 무 관 송 상 훈

교 정 : 경 상 북 도 한 영 희  
경 상 북 도 김 현 주

인 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생인쇄조합

TEL : (02) 426-4415

FAX : (02) 429-9562

---

※ 이 책자의 전문(全文)은 지방행정연수원 홈페이지 ([www.logodi.go.kr](http://www.logod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비매품〉

